

2021 - 64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2017.3.9.)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9호(2017.3.9)로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4호(2017.8.17)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3호(2017.11.23)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4호(2018.6.21)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48호(2020.8.20)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9호(2021.1.14)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48호 (2020.8.20)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도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I.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연번	구분	내용	
1	명칭	주식회사 용산피에프브이	
	대표자 성명	이지상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34층 3401호 (한강로1가, 대우 웰드마크 용산)	
	법인등록번호	110111-4917964	
2	명칭	주호반건설	
	대표자 성명	기정	송종민
	변경		박철희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법인등록번호	204711-0007384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1) 도로(변경없음)
 - 2) 공공청사(변경)

<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공청사	공공 업무시설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건축면면적 5,610.3㎡	-건축물 기부채납 (지하1층, 지상2층) -실내건축비용 포함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는 설치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되며,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공청사	공공 업무시설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	건축면면적 5,610.3㎡	-건축물 기부채납 (지하1층, 지상2층)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는 설치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되며,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 준용(기부채납 시설 운영부서와의 협의에 의해 추가되는 인테리어(집기 등 포함) 비용 등 반영하여 건축물 설치비용을 따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구체적 성능수준은 별도 첨부)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부기사항 변경	- 기부채납 시설 운영부서와의 협의에 의해 추가되는 인테리어(집기 등 포함) 비용 등 반영하여 기부채납 계획을 변경함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III.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02-2133-62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다)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바) 공공기여 계획(변경)

구분	제공면적		기부채납 면적		기부채납 비율(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임대주택	22,853.09㎡	22,853.09㎡	1,569.0㎡	1,569.0㎡	18.1%	18.1%
기반시설(도로)	1,633.9㎡	1,633.9㎡	1,633.9㎡	1,633.9㎡	18.8%	18.8%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5,610.3㎡	5,610.3㎡	1,238.0㎡	1,248.0㎡ (증 10㎡)	14.3%	14.4% (증 0.1%)
계	-	-	4,440.9㎡	4,450.9㎡ (증 10㎡)	51.2%	51.3% (증 0.1%)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는 설치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되며,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운용기준」을 준용(기부채납 시설 운영부서와의 협의에 의해 추가되는 인테리어(집기 등 포함) 비용 등 반영하여 건축물 설치비용을 따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구체적 성능수준은 별도 첨부)

주) 전체 구역면적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공공기여계획 변경 -공공청사 기부채납 면적: 1,238㎡→1,248㎡ (증 10㎡)	- 기부채납 시설 운영부서와의 협의에 의해 추가되는 인테리어(집기 등 포함) 비용 등 반영하여 기부채납 계획을 변경함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3. 방재계획 : 변경없음. 끝.